|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3) (2014년 개정)**  (2010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04차 회의에서 통과;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재판 실천에 결부시켜 인민법원이 회사 설립, 출자, 지분 확인 등 분쟁 안건 심리 시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정관에 서명하거나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나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 설립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회사의 발기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주주도 포함된다.  **제2조**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자체 명의로 대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자가 당해 발기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가 전 항에서 규정한 계약에 대해 인정하였거나 이미 실제로 계약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한 후, 계약 상대자가 회사에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3조** 발기인이 설립중인 회사 명의로 대외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설립된 이후 계약 상대자가 회사에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 발기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설립중인 회사 명의로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입증되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상의 책임부담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자가 선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사유로 인해 회사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고 채권자가 모든 또는 일부 발기인에게 회사설립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일부 발기인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 후 기타 발기인에게 해당 채무를 분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타 발기인이 약정한 책임 분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판정하여야 하며, 책임 분담비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시키며, 출자비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액수로 책임을 부담시키다.  일부 발기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여 기타 발기인이 그 설립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채무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과실의 상황에 비추어 과실 일방의 책임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발기인이 회사설립 직책을 수행하는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져다주어 회사가 설립된 후 피해자가 회사에 권리침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회사설립이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모든 발기인에게 연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무과실 발기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과실이 있는 발기인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6조**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인수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그가 인수한 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발기인의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 발기인이 당해 주식을 별도로 모집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모집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식 인수인의 주금 지연 납부가 회사에 손실을 가져다주어 회사가 당해 주식 인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인이 처분권이 없는 재산으로 출자한 후 당사자 지간에 출자행위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106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횡령, 뇌물수수, 점유, 유용 등 불법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통화로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불법 범죄행위를 추궁하거나 처벌을 가할 시에는 경매 또는 매각 방식을 취하여 관련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자인이 행정배당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거나 권리제한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후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토지변경 수속을 하거나 권리제한을 해제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거나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인이 법적 출자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자인이 출자한 비통화 재산이 법적 가치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기구에 당해 재산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평가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인이 법적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자인이 출자한 건물, 토지사용권 또는 권리등기 수속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등 재산이 이미 회사에 교부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권리등기 변경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권리등기 변경수속을 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전술한 기한 내에 권리등기 변경수속을 완료하였다면 인민법원은 그가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출자인이 회사에 실제 교부한 재산에 대해 상응하는 주주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출자인이 전 항에서 규정한 재산으로 출자하고 명의변경 수속을 하였으나 회사 사용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회사에 실질적으로 교부하기 전에는 해당 주주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자인이 기타 회사의 지분으로 출자한 동시에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인이 이미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인의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경우  (2) 출자지분에 권리하자가 없거나 권리제한이 없는 경우  (3) 출자인이 이미 지분양도와 관련한 법적 수속을 이행한 경우  (4) 출자지분이 법적 가치평가를 거친 경우.  지분 출자가 전 항 제(1), (2), (3)호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회사, 기타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출자인에게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보정 조치를 취하여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가 법적 출자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지분 출자가 이 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회사, 기타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관련 주주의 행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부합되며 또한 회사 권익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당해 주주가 출자금을 도피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1) 허위 재무제제표 작성을 통해 조작한 이익을 배당  (2) 허위 채권, 채무관계를 조작하여 그 출자금을 전출  (3) 관련거래를 이용하여 출자금을 전출  (4) 기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자금을 도피한 행위.  **제13조** 주주가 출자의무를 의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그에게 회사에 대한 법적 출자의무를 완전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미출자 원리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한 보충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가 상술한 책임을 부담한 후 기타 채권자가 같은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주주가 회사 설립 시에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회사 발기인에게 피고 주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회사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한 후에는 피고 주주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회사법 제1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자를 납부 완료하지 아니한 이사, 고급관리인원에게 상응하는 책임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책임을 부담한 후 피고 주주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주가 출자금을 도피한 후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회사에 출자 원리금을 반환하고 출자금 도피에 협조를 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채권자가 출자금을 도피한 주주에게 출자금을 도피한 원리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해 보충 배상책임을 지거나 출자금 도피에 협조를 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출자금을 도피한 주주가 상술한 책임을 부담한 후 기타 채권자가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출자인이 법정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비통화 재산으로 출자한 후 시장의 변화 또는 기타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출자재산의 평가절하가 초래되어 회사, 기타 주주 또는 채권자가 당해 출자인에게 출자금 보완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금을 도피한 경우, 회사가 회사 정관이나 주주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이익배당청구권, 신주 우선인수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주주권리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여 당해 주주가 해당 제한의 무효 인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출자금 전부를 도피하고 회사가 납부 또는 반환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출자를 납부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주주회의 의결로 당해 주주의 자격을 해제한 경우, 당해 주주가 그 해제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전 항의 규정 상황에서 판결할 때 인민법원은 회사에서 시의 적절하게 법정 감자절차를 밟거나 기타 주주나 제3자가 상응하는 출자금을 납부하도록 석명하여야 한다. 법정 감자절차를 밟거나 기타 주주나 제3자가 상응하는 출자금을 납부하기 전에 회사 채권자가 이 규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당해 주주에게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거나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채권자가 이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전술한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배상을 소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지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회사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부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금을 도피한 경우,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그에게 출자의무의 전면 이행 또는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 후 피고 주주가 소송시효를 이유로 그에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회사 채권자가 채권 소송시효 기간에 이 규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금을 도피한 주주에게 배상책임을 주장한 후 피고 주주가 출자의무 또는 출자금 반환의무 소송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에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당사자 지간에 출자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주주의 출자의무 이행을 의심하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한 경우, 피고 주주는 이미 이행한 출자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주주자격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며, 아울러 분쟁 지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 당사자 지간에 지분 소속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후 일방이 인민법원에 그 보유지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실 중의 하나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이미 법에 따라 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출자를 인수함과 아울러 법률, 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황  (2) 이미 회사 지분을 양수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승계함과 아울러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황.  **제23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거나 법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후 회사가 회사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회사에서 상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출자인과 명의 출자인 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출자인은 출자에 따라 투자권익을 향유하고 명의 출자인은 명의 주주로 약정한 후 실제 출자인과 명의 주주가 당해 계약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실제 출자인과 명의 주주가 투자권익의 귀속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실제 출자인이 그가 실제 이행한 출자의무를 근거로 명의 주주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명의 주주가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거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사실을 이유로 실제 출자인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실제 출자인이 회사의 기타 반수 이상 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에 주주변경, 출자증명서 발급, 주주명부 등재, 회사 정관 등재를 청구함과 아울러 회사등기기관의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명의 주주가 그 명의로 등기한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 후 실제 출자인이 해당 지분에 대한 실제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분 처분행위의 무효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명의 주주가 지분처분으로 인해 실제 출자인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어 실제 출자인이 명의 주주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사 채권자가 회사 등기기관에 등록된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에게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해 미출자 원리금 범위 내에서 보충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주주는 단지 명의 주주이지 실제 출자인이 아님을 이유로 그에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명의 주주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실제 출자인에게 배상을 소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분을 양도한 후 회사 등기기관에 가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 주주가 그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양수 주주가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 주주의 지분 처분행위의 무효인정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원 주주의 지분 처분이 양수 주주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어 양수 주주가 원 주주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변경등기를 제때에 하지 않은데 대해 과실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양수 주주가 변경등기를 제때에 하지 않는데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의 책임을 적당하게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자하고 동시에 회사 등기기관에 당해 타인을 주주로 등기한 경우 도용 등기행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사, 기타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도용 등기대상 주주에게 출자 보완책임을 부담하거나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  **规定（三）**  (2010年12月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04次会议通过；根据2014年2月1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07次会议《关于修改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的决定》修正)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结合审判实践，就人民法院审理公司设立、出资、股权确认等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作出如下规定。  **第一条** 为设立公司而签署公司章程、向公司认购出资或者股份并履行公司设立职责的人，应当认定为公司的发起人，包括有限责任公司设立时的股东。  **第二条** 发起人为设立公司以自己名义对外签订合同，合同相对人请求该发起人承担合同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公司成立后对前款规定的合同予以确认，或者已经实际享有合同权利或者履行合同义务，合同相对人请求公司承担合同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条** 发起人以设立中公司名义对外签订合同，公司成立后合同相对人请求公司承担合同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公司成立后有证据证明发起人利用设立中公司的名义为自己的利益与相对人签订合同，公司以此为由主张不承担合同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相对人为善意的除外。  **第四条** 公司因故未成立，债权人请求全体或者部分发起人对设立公司行为所产生的费用和债务承担连带清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部分发起人依照前款规定承担责任后，请求其他发起人分担的，人民法院应当判令其他发起人按照约定的责任承担比例分担责任；没有约定责任承担比例的，按照约定的出资比例分担责任；没有约定出资比例的，按照均等份额分担责任。  因部分发起人的过错导致公司未成立，其他发起人主张其承担设立行为所产生的费用和债务的，人民法院应当根据过错情况，确定过错一方的责任范围。  **第五条** 发起人因履行公司设立职责造成他人损害，公司成立后受害人请求公司承担侵权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公司未成立，受害人请求全体发起人承担连带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公司或者无过错的发起人承担赔偿责任后，可以向有过错的发起人追偿。  **第六条** 股份有限公司的认股人未按期缴纳所认股份的股款，经公司发起人催缴后在合理期间内仍未缴纳，公司发起人对该股份另行募集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募集行为有效。认股人延期缴纳股款给公司造成损失，公司请求该认股人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七条** 出资人以不享有处分权的财产出资，当事人之间对于出资行为效力产生争议的，人民法院可以参照物权法第一百零六条的规定予以认定。  以贪污、受贿、侵占、挪用等违法犯罪所得的货币出资后取得股权的，对违法犯罪行为予以追究、处罚时，应当采取拍卖或者变卖的方式处置其股权。  **第八条** 出资人以划拨土地使用权出资，或者以设定权利负担的土地使用权出资，公司、其他股东或者公司债权人主张认定出资人未履行出资义务的，人民法院应当责令当事人在指定的合理期间内办理土地变更手续或者解除权利负担；逾期未办理或者未解除的，人民法院应当认定出资人未依法全面履行出资义务。  **第九条** 出资人以非货币财产出资，未依法评估作价，公司、其他股东或者公司债权人请求认定出资人未履行出资义务的，人民法院应当委托具有合法资格的评估机构对该财产评估作价。评估确定的价额显著低于公司章程所定价额的，人民法院应当认定出资人未依法全面履行出资义务。  **第十条** 出资人以房屋、土地使用权或者需要办理权属登记的知识产权等财产出资，已经交付公司使用但未办理权属变更手续，公司、其他股东或者公司债权人主张认定出资人未履行出资义务的，人民法院应当责令当事人在指定的合理期间内办理权属变更手续；在前述期间内办理了权属变更手续的，人民法院应当认定其已经履行了出资义务；出资人主张自其实际交付财产给公司使用时享有相应股东权利的，人民法院应予支持。  出资人以前款规定的财产出资，已经办理权属变更手续但未交付给公司使用，公司或者其他股东主张其向公司交付、并在实际交付之前不享有相应股东权利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一条** 出资人以其他公司股权出资，符合下列条件的，人民法院应当认定出资人已履行出资义务：  （一）出资的股权由出资人合法持有并依法可以转让；  （二）出资的股权无权利瑕疵或者权利负担；  （三）出资人已履行关于股权转让的法定手续；  （四）出资的股权已依法进行了价值评估。  股权出资不符合前款第（一）、（二）、（三）项的规定，公司、其他股东或者公司债权人请求认定出资人未履行出资义务的，人民法院应当责令该出资人在指定的合理期间内采取补正措施，以符合上述条件；逾期未补正的，人民法院应当认定其未依法全面履行出资义务。  股权出资不符合本条第一款第（四）项的规定，公司、其他股东或者公司债权人请求认定出资人未履行出资义务的，人民法院应当按照本规定第九条的规定处理。  **第十二条** 公司成立后，公司、股东或者公司债权人以相关股东的行为符合下列情形之一且损害公司权益为由，请求认定该股东抽逃出资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制作虚假财务会计报表虚增利润进行分配；  （二）通过虚构债权债务关系将其出资转出；  （三）利用关联交易将出资转出；  （四）其他未经法定程序将出资抽回的行为。  **第十三条** 股东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公司或者其他股东请求其向公司依法全面履行出资义务的，人民法院应予支持。  公司债权人请求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的股东在未出资本息范围内对公司债务不能清偿的部分承担补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的股东已经承担上述责任，其他债权人提出相同请求的，人民法院不予支持。  股东在公司设立时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依照本条第一款或者第二款提起诉讼的原告，请求公司的发起人与被告股东承担连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公司的发起人承担责任后，可以向被告股东追偿。  股东在公司增资时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依照本条第一款或者第二款提起诉讼的原告，请求未尽公司法第一百四十七条第一款规定的义务而使出资未缴足的董事、高级管理人员承担相应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董事、高级管理人员承担责任后，可以向被告股东追偿。  **第十四条** 股东抽逃出资，公司或者其他股东请求其向公司返还出资本息、协助抽逃出资的其他股东、董事、高级管理人员或者实际控制人对此承担连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公司债权人请求抽逃出资的股东在抽逃出资本息范围内对公司债务不能清偿的部分承担补充赔偿责任、协助抽逃出资的其他股东、董事、高级管理人员或者实际控制人对此承担连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抽逃出资的股东已经承担上述责任，其他债权人提出相同请求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五条** 出资人以符合法定条件的非货币财产出资后，因市场变化或者其他客观因素导致出资财产贬值，公司、其他股东或者公司债权人请求该出资人承担补足出资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十六条** 股东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或者抽逃出资，公司根据公司章程或者股东会决议对其利润分配请求权、新股优先认购权、剩余财产分配请求权等股东权利作出相应的合理限制，该股东请求认定该限制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七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未履行出资义务或者抽逃全部出资，经公司催告缴纳或者返还，其在合理期间内仍未缴纳或者返还出资，公司以股东会决议解除该股东的股东资格，该股东请求确认该解除行为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  在前款规定的情形下，人民法院在判决时应当释明，公司应当及时办理法定减资程序或者由其他股东或者第三人缴纳相应的出资。在办理法定减资程序或者其他股东或者第三人缴纳相应的出资之前，公司债权人依照本规定第十三条或者第十四条请求相关当事人承担相应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八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即转让股权，受让人对此知道或者应当知道，公司请求该股东履行出资义务、受让人对此承担连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公司债权人依照本规定第十三条第二款向该股东提起诉讼，同时请求前述受让人对此承担连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受让人根据前款规定承担责任后，向该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的股东追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十九条** 公司股东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或者抽逃出资，公司或者其他股东请求其向公司全面履行出资义务或者返还出资，被告股东以诉讼时效为由进行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公司债权人的债权未过诉讼时效期间，其依照本规定第十三条第二款、第十四条第二款的规定请求未履行或者未全面履行出资义务或者抽逃出资的股东承担赔偿责任，被告股东以出资义务或者返还出资义务超过诉讼时效期间为由进行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条** 当事人之间对是否已履行出资义务发生争议，原告提供对股东履行出资义务产生合理怀疑证据的，被告股东应当就其已履行出资义务承担举证责任。  **第二十一条** 当事人向人民法院起诉请求确认其股东资格的，应当以公司为被告，与案件争议股权有利害关系的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第二十二条** 当事人之间对股权归属发生争议，一方请求人民法院确认其享有股权的，应当证明以下事实之一：  （一）已经依法向公司出资或者认缴出资，且不违反法律法规强制性规定；  （二）已经受让或者以其他形式继受公司股权，且不违反法律法规强制性规定。  **第二十三条** 当事人依法履行出资义务或者依法继受取得股权后，公司未根据公司法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的规定签发出资证明书、记载于股东名册并办理公司登记机关登记，当事人请求公司履行上述义务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四条** 有限责任公司的实际出资人与名义出资人订立合同，约定由实际出资人出资并享有投资权益，以名义出资人为名义股东，实际出资人与名义股东对该合同效力发生争议的，如无合同法第五十二条规定的情形，人民法院应当认定该合同有效。  前款规定的实际出资人与名义股东因投资权益的归属发生争议，实际出资人以其实际履行了出资义务为由向名义股东主张权利的，人民法院应予支持。名义股东以公司股东名册记载、公司登记机关登记为由否认实际出资人权利的，人民法院不予支持。  实际出资人未经公司其他股东半数以上同意，请求公司变更股东、签发出资证明书、记载于股东名册、记载于公司章程并办理公司登记机关登记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五条** 名义股东将登记于其名下的股权转让、质押或者以其他方式处分，实际出资人以其对于股权享有实际权利为由，请求认定处分股权行为无效的，人民法院可以参照物权法第一百零六条的规定处理。  名义股东处分股权造成实际出资人损失，实际出资人请求名义股东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六条** 公司债权人以登记于公司登记机关的股东未履行出资义务为由，请求其对公司债务不能清偿的部分在未出资本息范围内承担补充赔偿责任，股东以其仅为名义股东而非实际出资人为由进行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名义股东根据前款规定承担赔偿责任后，向实际出资人追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七条** 股权转让后尚未向公司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原股东将仍登记于其名下的股权转让、质押或者以其他方式处分，受让股东以其对于股权享有实际权利为由，请求认定处分股权行为无效的，人民法院可以参照物权法第一百零六条的规定处理。  原股东处分股权造成受让股东损失，受让股东请求原股东承担赔偿责任、对于未及时办理变更登记有过错的董事、高级管理人员或者实际控制人承担相应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受让股东对于未及时办理变更登记也有过错的，可以适当减轻上述董事、高级管理人员或者实际控制人的责任。  **第二十八条** 冒用他人名义出资并将该他人作为股东在公司登记机关登记的，冒名登记行为人应当承担相应责任；公司、其他股东或者公司债权人以未履行出资义务为由，请求被冒名登记为股东的承担补足出资责任或者对公司债务不能清偿部分的赔偿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